

보종 22699
장기상품부 2019년 4월 제작

무배당 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19.04)

 KB 손해보험



약관

목 차

공통사항

보험약관 이해하기	4
보험용어 해설	5
주요내용 요약서	6
가입자 유의사항	8
자주 발생하는 민원	12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13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15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23
고객정보 취급방침	25

보통약관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28
제1조(보장종목)	28
제2조(용어의 정의)	28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28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8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35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35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39
제4관 보험금의 지급	39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39
제6조(보험금의 청구)	39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39
제8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40
제9조(주소변경의 통지)	40

제10조(대표자의 지정)	40
---------------	----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41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41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42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42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43
제16조(청약의 철회)	43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43
제18조(계약의 무효)	44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44
제20조(보험나이 등)	45
제21조(계약의 소멸)	45
제22조(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45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45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46
제2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46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46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47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47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47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8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48
제32조(해지환급금)	48
제33조(보험계약대출)	48
제34조(배당금의 지급)	48

9	48
35 ()	48
36 ()	48
10	49
37 ()	49
38 ()	49
39 ()	49
40 ()	49
41 ()	49
11	49
42 ()	49
43 ()	49
44 ()	49
45 ()	49
46 (가)	50
47 ()	50
48 ()	50
49 ()	50
50 ()	50
12	51
51 ()	51
52 ()	51
53 ()	51
54 (1 ())	51
55 ()	52

1	
1.	【 】 54
2.	【 】57
3.	(MRI/MRA) 【 】61	
2	
1.	66
2.	66
3.	67
4.	69
5.	가	69
6.	69
7.	70
8.	가	71
9.	74

【 1】	76
【 2】	78
【 3】	79
【 4】	96
【 4-1】	96
【 4-2】	97

【 1】	98
【 2】	99
【 3】	100
【 4】	101
【 5】	101
【 6】	102
【 7】	102
【 8】	103
【 9】	104
【 10】	104
【 11】	106
【 12】	106
【 13】	107
【 14】	107
【 15】	109
【 16】	111
【 17】	112

?

「 」 「 (15) 」

1. 가	2.	3.
· · · 가	· · ·	· · ·

(www.kbinsure.co.kr)

, 가

MY KB, (1544-0114)

MY KB	, , , / , / ,
1544-0114	, , ,



가
·

가

,
가

가

가

가

:

가

:

가

:

=

+

가

가

,

,

,

,

가

가

,

가

,

가

가

금융상황
거액양권
특별양권
별표
법·규정



가
 , 가
 , 가
 15 가
 , 가
 30 (, 65)
 45)
 가
 3
 1. 가
 -
 - 15 ,
 가
 가

-
 2. 가
 1. 가
 2. () 가 (가
) 80%
 3. () 가 (가
)
 가 2
 (1 () 7) ()
 ()
 () 3 가
 가 (')

가

2.

7

가

가

50%

7

가

1.

:

,

(

,

)

(,
.)

2.

:

,

,

3.

:

가

가

가

3.

가

50%

7

가

7

가

가

가 3

가

가

가

1.

3

가

가

(

가

50%

)

30

(,)

- 가
(), (), ,

()	가 ()
()	가 ()
()	가
()	가
()	50%

- 가 , 4 ,

		가
		가 (,)
		가
		가 (,)

, , .

가

가 (3) 가
1. 가 가
(1) 가 99 가 100
100 , 가 가 100
가 101 가

2. 가 가 가
(2)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1. 가 가 가 (3) 가
(1) 가 99 가 100
100 , 가 가 100
가 101 가

2. 가 가 가
(2)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5) 가
1. 가 가 가

(1) 가 99 가 100
100 , 가 가 100
가 101 가
(2) 가 가
2. 1. 가 가

3.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가 (,) .



가
가

- : 1 ,

- :

- : (가 가 가
가
가

- : 가 88% 99% ,

- : ()

- : " "



/ : KB (
 www.kbinsure.co.kr/ m.kbinsure.co.kr)
 - 5 가 , , ()
 - , 5 가 . /
 : 04027 491() KB
 19 (가)
 - 가 ,
 : 가 (가)
 (SMS, LMS,) .



가

- 가 가

-

-

- 가 (3 가)
 7

()

「 , 「 , 「 , 「
 () ,
 () 가 .

. 가

가 . ,

가 가 ,

가 .(http://www.knia.or.kr)

금융사항
 보통약관
 특별약관
 별표
 법·규정

2015.3.12.

3

가
2 . (,
.)

가

50%

가

가

3

(500

가

가

3

)

/

가

()가

가

가

3

3

3

가

3

()

가

(www.kbinsure.co.kr)

: 1544-0114

117 KB

(

가

.)

3

(

7

30

),

(www.kbinsure.co.kr/m.kbinsure.co.kr)

(1544-0114)

가

(

1332)

가

(1544-0114)



, , () 가

2015.1.1.
10

() 가 3 .

	() - [] ,	
	()	
	() 가 ·가 (,) :가 가 () (:가 ,) · : ,) ([]),	
	(가)	

	(, 50 가)	
	()	
	()	
	()	
	()	
	()	
	() * () ()	
	() 가 (:가 ,)	
	() 가 · : [] ()	

금융사항
거액양전
비폐양전
폐표
법·규정

	<p>· * ()</p> <p>가 가</p> <p>· : , ,</p> <p>X-ray , ,</p> <p>· : , ,</p> <p>· , : ,</p>	
	<p>·</p> <p>1. :</p> <p>2. ·</p> <p>(1) (,) , ·</p> <p>(2) ()</p>	

	<p>· () -</p> <p>[] , (가)</p> <p>/</p>	
	<p>() 가</p> <p>·가 (,):</p> <p>가 , 가 (:가 ,):</p> <p>(:가)</p> <p>· (: , ,) ,</p> <p>[]</p>	
	<p>·</p> <p>* 가</p> <p>- / :</p> <p>- / : ,</p>	

	.	
	.	
	.	
	. 6	
	.	
	.	
	(, 50	
	가)	
	(
	()	
	(
	가)	

	3	3
	- (/)	- (/)
	-	- ()
		가
		가
		- / () /
	10	가
	, 가 ,	가 가
		가

	<p>· () -</p> <p>[] , (가)</p> <p>/</p>
	<p>() 가</p> <p>·가 (,):</p> <p>가 (:가 ,)</p> <p>· (: ,)</p> <p>[]),</p>

	3	3
	<p>- (/)</p> <p>-</p>	<p>- (/)</p> <p>- ()</p> <p>()</p> <p>-</p>
		가
		<p>가</p> <p>- / (</p> <p>) /</p> <p>/</p>
10	가	, 가 가
	, 가 ,	가 가
		가

()	· () · · :	
2	· · · () (/) (: CT, MRI,)	
	· ·	
	· (가)	
	가	
	· · () () : ()	·
	() 가 · (: 가 ,) · () · : · () []	·

/	· [, 50 가] · [() /]	
/	· (), ()	

	· () - [] , · / (가) () 가 · 가 (,) : 가 (: 가 ,) · (: ,) , ([]) ,	
	· - () , · , () / , · X-ray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가 () · ()
/	· ·
가	· 가
	· · · 가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3 ,) · · (가 가) ·
	· () ·
	· () - [] , · · 가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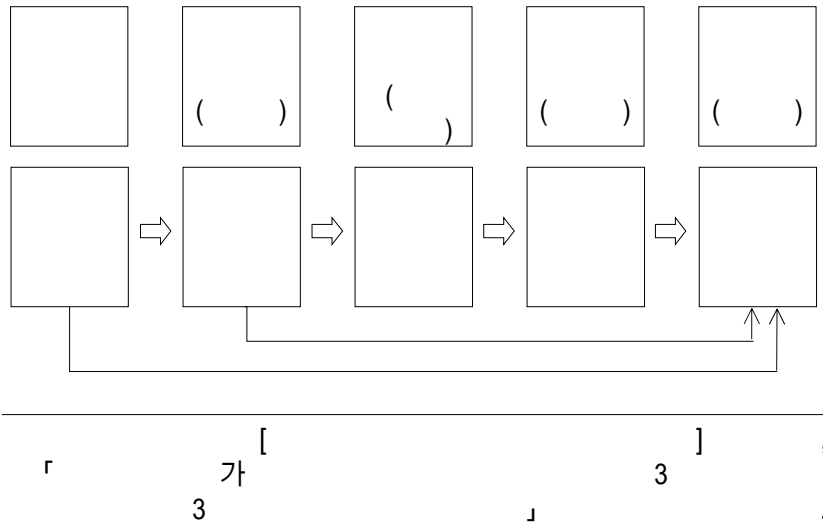
	· · ·
가 /	· () · · 가 가 · · ,

	· () - [] , · () , ([]) · 가 : , · () · [] () · [] -6
--	---

	· () · () · () · () · () · 가
--	--

	· 3 () ,
	· (가)
	· () ()): () () 가 · (:가 ,) · (:) []
	· 가 가 , () · · (, ,) · (, ,)
()	· , 가 · [] ·

(www.kbinsure.co.kr) ,
(1544-0114) .



1.

가.

1) 가
 (" ") 가
 2) 가
 " ") (가
 가

2. 「

: 1544-0114 ()
 : 135-550 117 KB
 : <http://www.kbinsure.co.kr>
 [> >]

가.

3
 「 가 35
 가 , ,
 3
 「 가 36
 가 ,

가

3

「 가 37 가

가

가

:

3

「 가 38

가가

가

가

「 가 39

: 02)708-1000
www.koreacb.com
 : 02)2122-4000
www.nice.co.kr

· NICE 가 :

KB

3. 가

	(031)590-5905	(02) 3702-8500	() 1332
	KB 260	5 68	38

1544-0114]

[

KB
KB

가

48 2 ()

1 「 「 」 4
「 」 32 , 33
「 」 4
「 」 32 1
(“ ”) 가 가

- 1.
2.
3.
4.
5.
6.

「 가
(“ ”)
가

- 1.
2.
3.
4.
5. 「 」 229
6.

KB KB 「 」

I.
1. 「 」 4
2. 「 」 2 2
3. 「 」 48 2 2 (48 2 2)
KB 가
KB (KB (), KB (),
KB (), KB (), KB (),
KB (), KB (), KB (), KB ()

,), KB ()

KB

가

1

KB

가

가

2

()

1

가

K B

KB	KB
KB	KB
KB	KB
KB	KB
KB	KB
KB	KB
KB	KB

보통약관



) 가 (

(【 】 【 】)

1

1 ()

1 가		4	
		가	
		가	
		가	
		가	
2		" "	

2 ()

【 1】

2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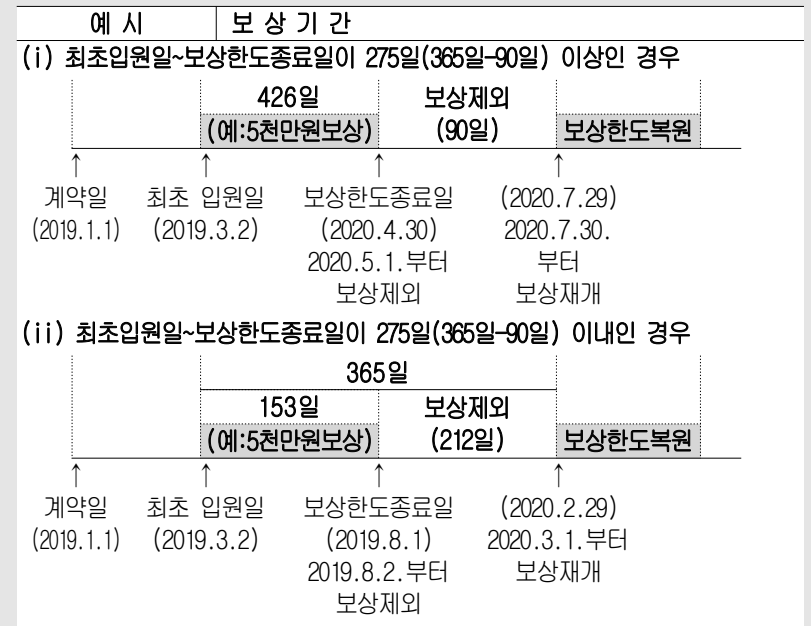
3 (가)

(1)

1 가 가 (5 가)

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구분	보상금액
표준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선택형 II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주)} 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을 포함합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

7]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상해통원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1)}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 ^{주2)} 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1)}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 ^{주2)} 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주)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을 포함합니다)
 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항 목	공제금액	
표준형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 제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품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선택형 II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 (보상대상의료비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관 련 법 규	의료법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2(병원등)의 규정에 의한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는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선 택 형 II	외래 (외래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처방조제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회귀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품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 조제 1건당)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예 시	보 상 기 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	↑	↑
	계약일 (2019.1.1)	계약해당일 (2020.1.1)	계약해당일 (2021.1.1)	계약종료일 (2021.12.31)
				보상종료 (2022.6.29)

-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

(3) 질병입원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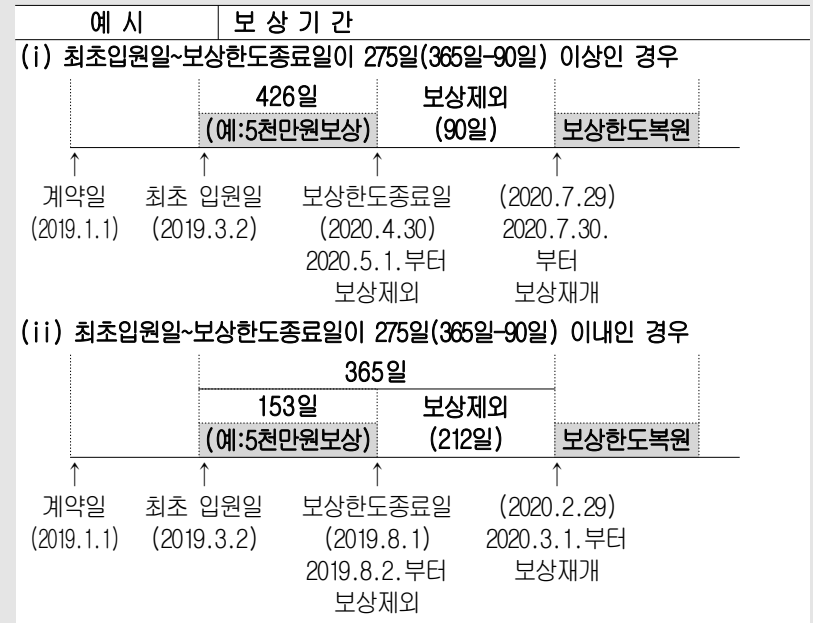
구분	보상금액
표준형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주)}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선택형 II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주)}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니다)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상급병실료차액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을 포함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

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3 가

4 (가)

(1)

1

1. 가 . , 가 .
2. 가 . , 가
3. 가
4. 가 , (),
5. , , , ,
6. 가 가 가가

2

1. (, , , ,), ,
2. , , , , , () (, , , ())
3. , , ,

3

1. (, (, 「 」 2) 「 " " 」
2. 「 」

가

3. 「 」)
4. 「 (,) , , 가 (「 가)
5. , , , , (, , , ,) , 가
6. , , , , , , (Arm Sling),
7. 가. (, , , ,) , () , (, 「 , 」) , () , 가
8. (TV , , ,) ,
9. () 3 () (1) 1 , 2 ,
10. 「 4 7 」 42

(2)

1

1. 가 . , 가 .
2. 가 . , 가
3. 가
4. 가 , () ,
- 가
5. , , , ,
6. 가

2

가 ,

1. (, ,) , ,
2. , , , , , () (,)
3. , , ,

3

1. (, (, 「 」 2) 「 " "
2. 「 」 가
3. 「 」 가 (「)
4. 「 (,) , , 가

5. , , , , (, , 가) ,

6. , , , , , , (Arm Sling),

7. 가. (. , ,) , () ,

(, 「 」) . , , (, 「 ,) ,

. , (가)

8. (TV , ,) ,

9. () 3 () (2) 1 4 ,

10. 「 6 7 」 42

11. 「 가 「 」 3 4

(3)

1

1. 가 . , 가 .

12. 「 」 42)

(4)

1

- 1. 가 , 가 .
- 2. 가 , 가 .
- 3. 가 .
- 4. 가 .

2

- 1. (F04~F99)
(,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
- 2. (N96 N98)
- 3. 가 (), (000 099)
- 4. (Q00 Q04)
- 5. (E66)
- 6. (N39.3, N39.4, R32)
- 7. (I84, K60 K62, K64)

3

- 1. (K00~K08) (, 「 」 2)
- 2. 「 」 가
- 3. 「 」

- 4. 「 (,), , 가 가
- 5. , , (,), , 가
- 6. 가 가 (), , ((Q82.5)) (impotence), ((G47.3) (phimosi)s), 「 」 9 1 ([2])
- 7. , , , , , , (Arm Sling),
- 8. 가. (, ,), (), (, 「 」) . , , ,) , (가) 가 ()

9. (TV , ,),

10.) (4) 1 4 , 6 3 (

11. (HIV) HIV (, 「 」)

12. 「 」 42

13. 「 가 「 」 3 4

4 2()

1 3 4

1.

2. (, , () ,)

3. (MRI/MRA) (,)

4. 1 , 2 , 3 ()

2 1 1 4 가

4

5 () 3 ()

가

6 ()

1 1. ()

2. () , , ,

3. () ,)

4. 가 「 」 3 ()

2 1 2 가 「 」 3 ()

7 ()

1 6 ()

3

2 1 가) (가 50%

6 () 30

1.

2.

3.

4.

5. 4 ,

6. 7 3

3 2 가 가 가
가 5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4 1 (2
【 2】
가

9 (가)
1 (가)
2 1 가 가
가 가

5 13 () 2
가

10 () 가2 1
1 가2

6 5 가

2 가 가
가 1
3 가2

7 가 3 (가 3) 3
가 3 「 」 3 () 가

가2 가2
가2

8 「 」 「 」 「 」

9 가

8 ()
1 ()

2 1

	가	가

4 1 가 가 가 가
 가 () 가 가
 (" ") , 가
 (" ")
 . , 가

5 가 1
 1 4

13 ()

1 가 1 11 ()
 가 가 가 가
 2. 12 () 1 가

2 1 1
 1. 가
 2. 가 1 1
 가 2 ()
 1)
 3. 3
 4. 가) ()
 가 ,
 5. 가 ,
 가

가.
 가
 .
 .

3 1 32 () 1

4 1 1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5 1 2 가 4 5
 12 ()

6 1 가 4 5 가

7 가

8 27 () () ()
 () () ()
 () () ()
 () () ()

14 ()
 가 (HIV)
 , 가
 가 5 ()
 1 가)

15 ()

- 1 가 가
- 2 (가 , ,)
- 3 , 1 ()
- 4 가 1 , 30 , 30 가 ,
- 4 가 1 , , 1 + 1%
- 5 가 2 (가 () 5)
- 6 5 " 5 () " 26 (가
- 7 27 (()) 5

16 ()

- 1 15
- 1.
- 2. 1
- 3. 가

6 2() 가, 2 (), 1-4 2()

- 2 1 30 (, 65 가 45)
- 3 ,
- 4 가 3
- 5 가 가 가
- 6 1 가

17 ()

- 1 가 , 가 (CD, DVD),
- 가

1. _____ (가)

2. _____ , _____ , _____ , _____

2 3
1. 가 1 가

2. 가 (가 2 2 3)

3 2
_____ , 1

1. 가 가
2. 가 가

가 _____ (signature)

_____ 2 3

4 2
_____ , _____

5 가 가

18 ()

1 _____ , _____ , 가

2 _____ , _____ 가

19 ()

1
1. _____
2. _____
3. _____
4. 가 , 가

2 가 1 _____ 1

3 가 1 4 가 가
32 () 1 가

4 가 _____ , 가

_____ 가 _____

_____ 가 _____

_____ 가 _____

5 가 4 가 가

6 1 가 가

7 1 가 가

_____ 가 가 ()

20 ()

1
2 1 6

가 가 1
3 ()

--	--

: 1989 10 2 , () : 2019 4 13
2019 4 13 - 1989 10 2 = 29 6 11 = 30

: 2019 10 1 => : 10 1
: 2020 2 29 => : 2

21 ()

가 가

가	
---	--

1. :

2. : 가

22 (가)

1 가 가 가
1. 가 가 가 가

2. 가 가 가 가

3 가 가 2 가 ,
(,), () 가 가 , 가
가 가 가

4 가 3
, 「 」 2 2 2 3
가

5 4 가 1
() ()

7

23 (1)

1 가 1
가 1
1 가 1
가 가

2 가 가 1 가

가	1
, 가	1
1	.

③ 2

1. 11 () 가 가

2. 13 () 가 가

3. 가 가

④ 1 3

24 (2)

2 가

) 가 (

가

가 2	.

25 ()

① 26 () ())

()

가 , 33 () 1 . , 가

() ()

② 1 () (가 가

③ 1 2 . 1

1 ,

④ 1 ()

1 가 32 (

) 1

⑤ 15 ()

, () ()

가	.

26 () ()

① 가 2 14 (1 7) () ,

() () ,

1. ()

2. ()

3. 가 가

② () ()

③ 가 1

④ 가 1 () 2 2 2

3 , 「 」 2 2 2

가 가

1 () ()

5 1 32 () 1

()

가 , 가

27 (())

1 26 (())

가 ()

() 3 가 가 ()

() 가 +

1%

2 1 () 11 (),

13 (), 14 (), 15 ()

23 (1)

3 1 () 13

가 11 ()

()가

28 (())

1 , 가 19

가

() 1

()

2 가 1 ()

) , (

3 1 1

4 1 7 가 1

7 () 가 1

(3) 15 1

5 가

가가

가

가 ,

13

8

29 ()

1 32 () 1

2 1 가 " " " "

" 가 " , " " "

3 2 2 " 가

30 ()

1. 가 ()

2. 가

가

1 32

() 1

31 ()

1 가

2 1 3

3 1 2

32 () 1

32 ()

1 가

2 가 3

【 2】

3

33 ()

1 가

2 가 1

3 가

4 3 26 () ()

5

34 ()

9

35 ()

1 2

2

=

()^x

36 ()

1 2009 10 1 가

가

2 1 가 가 가

가 가

37 ()

가

38 ()

1

1

(, ")

39 ()

1.

가

2.

3

2

1

가

37 ()

39 ()

1.

(, 가)

2.

(, 가)

()

3.

()

가

40 ()

가

1.

()

2.

3.

()

)

4.

가

5.

41 ()

1

40 ()

37 ()

2

가

)

42 ()

43 ()

가

44 ()

3

가

가

가

2019 9 1
가

2022 9 1

45 ()

1

2

3

46 (가)

47 ()

- ① ,
- ② 가
- ③ 가
- ④ 가 17 () 5
가 가 ,
- ⑤ 가 4
5 ()

48 ()

- ① 「 」, 「 」 ,
- ②

17 () :

- 1.
- 2.

16 () 2
가

32 ()
가

- 1.
- 2.
- 3.
- 4.
- 5.

49 ()

50 ()
가 「 」

가

5,000

1

55 ()

52 () ,

특별약관

제1장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장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1.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갱신계약】** (**【갱신계약】** 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정의
도수치료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체외충격파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합니다)
증식치료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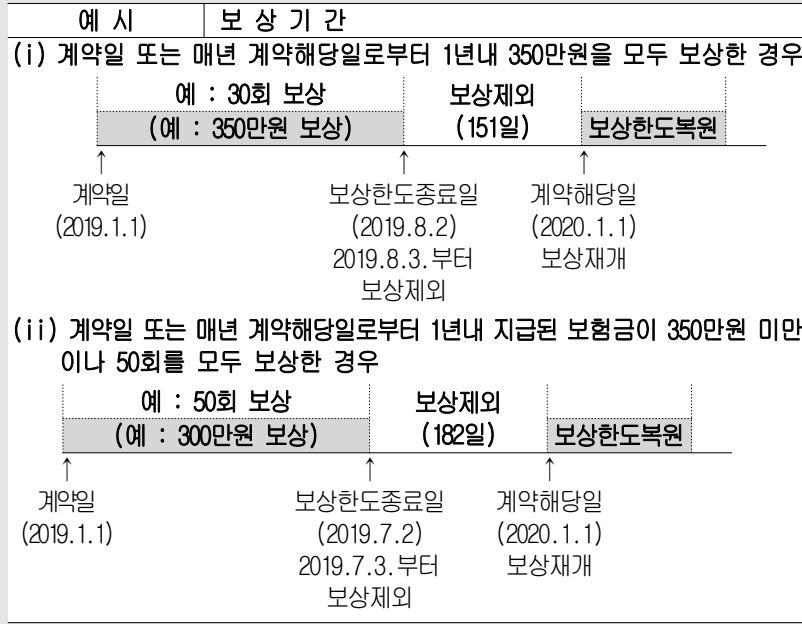
제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를 포함합니다)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분	내용
보상대상 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를 포함합니다)
공제 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 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 ^{주)} 까지 보상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병원에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 3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삼상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 6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7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

- 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항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Q47.3)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항 ([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 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

2.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갱신계약】 (【갱신계약】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주)} 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정의
주사료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중앙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주)} 주)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 분류표에 따릅니다.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및 "화학요법제",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주)} 주)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 분류표에 따릅니다.
희귀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주)} 주)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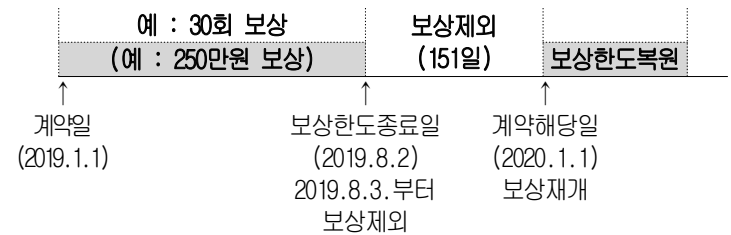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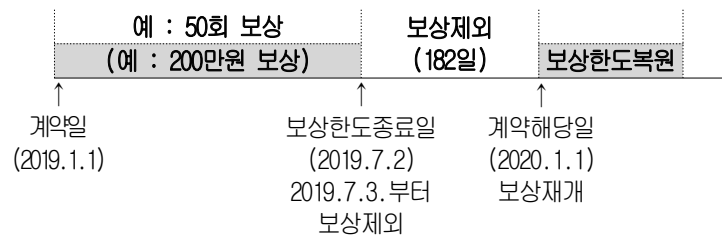
구분	내용
보상대상 의료비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공제금액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예시 보상기간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2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250만원 미만이나 50회 모두 보상한 경우



② 제1항의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를 포함합니다),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통약관에서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병원에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서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 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말함

니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전후 입원기간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 ⑤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예 시		보 상 기 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	↑	↑	↑	↑
계약일 (2019.1.1)	계약해당일 (2020.1.1)	계약해당일 (2021.1.1)	계약종료일 (2021.12.31)	보상종료 (2022.6.29)	

- ⑧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비급여 주사료를 계산합니다.
-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 등” 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공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 5. 비만(E66)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

- 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 Q82.5)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2.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사료 및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제비 또는 조영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갱신계약】 (【갱신계약】 은 자동갱신으로 운영합니다)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상하는 내용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정의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상의 MRI 범주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분	내용
보상대상 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공제금액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한도이내에서 보상

② 피보험자가 병원에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상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예시		보상기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보상대상기간 (1년)	추가보상 (180일)
		↑	↑	↑	↑
계약일 (2019.1.1)	계약해당일 (2020.1.1)	계약해당일 (2021.1.1)	계약종료일 (2021.12.31)	보상종료 (2022.6.29)	

⑤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000-0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초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 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 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별약관

제2장 제도성 특별약관



1.

- 1 () 가
- ① (" ") 가
- 23 (1)
- ② 가
- ③ 가
- ④ 가 , (,),

2 ()

- ① () 가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
업, 직무 또는 동호회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한 사실을 회사
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1 2 【1
2 (2
1 2 3
125cc 3
)】 50cc (0.59kW) 가 가 가
- ③ 가 가 가

- 3 (()) () ()
- 27 () () ()
- 28 () ()
- 4 ()

2.

- 1 () (『 』)
- ① 가
1. , , , , 5
2. , 5
3. 가가 5
- ② 가
- ③ 가 5 (『 』) 가 (『 』) (『 』)
- 2 () 1 () 2

3 (가,) 가,
① 2 (가,)

② 1 가 가 가
1. 가
, 가
, 가 가

2. 가 가
가

3. 가

③ 1 가

④ 1 가 가

4 () 가5
①

② 가 가 5 1 1
, 가 가 5

5 () 가 가
①

② 가

6 (가)
① 가 가

1. 가
2. 가
② 1 가

7 () 가 18 ()

8 ()

3.

1 ()
① () 가 가 , 2
가 가

1. 가 가

2. 13 ()

② 1 가 가

(【 4】 ()) 가

③ 23 (1)

④ 가

⑤

1. 2 ((가)) 1 1 가

2. 2 ((가)) 1 2 가

2 ((가))

① 가 가 【 4】(가)

【 3】(가) 80%

1. 가 (「 」) (【 4-1】(「 」))

2. 가 (「 」) (【 4-2】(「 」))

② 1 가 「 1 5 」 「 」 , 「 」

③ 2 가 「 1 1 」 , 1 2

④ 1 가

1. 1 1

2. 1 2 가

3. 가 가 가 가 가

⑤ 가 가 가 가 가

⑥ 가 가 가 가 가

⑦ 1 4 가

3 ((가)) () ()

()) 28 (27 (())

4 ()

4.

1 (2)

2 ()
가 가

3 ()
가

4 ()

가. 가

1 (가 가)
[1] 가 가 1 15
(가) 1 가

[2] 1 1 30 1 가

2 ()
가

3 ()

5. 가

1 ()
[1] (『 』)
가

- 1.
2.
3.
4.
5.

[2] 1 가

2 (가)

3 ()

6.

1 () ()

2 () 가
[1] () 가
[2] 2 2 2 3
(『 』) 2
17 () 2

3 ()
 ① 가 , 「 ,) (CD, DVD
)
 ② 가 5
 4 ()
 ① 가 3 () 1
)
 ② 1 () 가
 ③ 1 2 가 () ()
 , (가)
 5 ()

7.

1 () 가 가 가
 ① 가 가 가
 . ()
 ② 가 가
 ③ 가 가
 2 () 가 가
 가 가
 3 (가) 가 가
 ① 가 가 가
 1.
 가
 가 가
 가 (, ,)
 2.
 가 가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해당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	-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	-	-	80%	60%
4년이상 5년미만		-	-	-	-	80%

② 제1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5조(특별약관내용의 변경)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해당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계약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실손의료보험 출생전자녀가입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정의
태아	계약을 체결 할 때에 출생하지 않은 자(자녀)로 피보험자가 될 자를 말합니다.
임신부	위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출생일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생일로서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생예정일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출생예정일로서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기재된 출생예정일을 말합니다.
태아보장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생일, 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태아위험보장	태아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계약일로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태아보장기간 이후에도 태아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전자녀(태아)인 경우,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시작하여 제4조(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를 한 기간까지 적용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이 계약에 적합한지를 승낙하기 위하여 임신부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의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로 될 자가 태어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태어는 출생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소급하여 피보험자가 됩니다.

제4조(출생통지)

- ① 계약자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2.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② 회사의 제1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합니다.
 - 1. 피보험자의 성별
 - 2. 출생일
 - 3. 출생일 기준의 태아보장기간 및 출생일 이후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③ 회사는 제1항의 알림 및 제2항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유산 또는 사산 등)

- ①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1. 통지서(회사양식)
 - 2.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 3. 보험증권
 - 4. 최종보험료 영수증
- ③ 회사는 제2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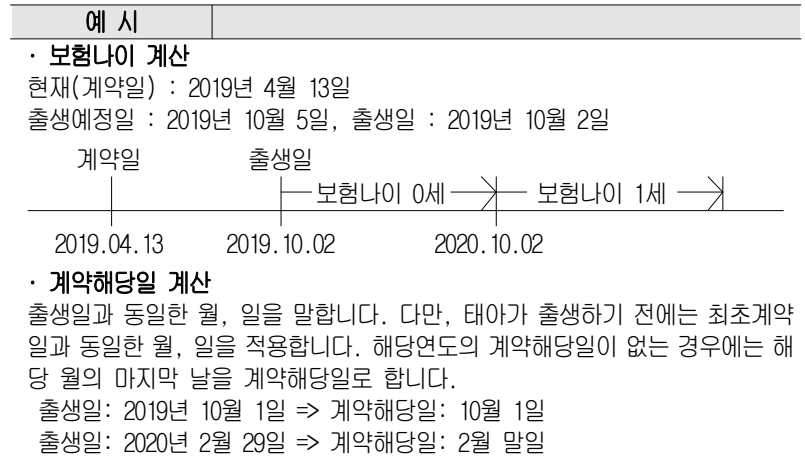
제6조(복수출생의 경우)

- ①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계약자는 출생아 각각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릅니다. 다만, 하나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생아 중 1명만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의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1인을 새로운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제2항의 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새로 피보험자로 될 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3. 보험증권
- ④ 제2항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때부터 변경후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⑥ 제2항의 피보험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⑦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에는 제2항의 피보험자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험나이 계산 및 특례)

- ①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20조(보험나이 등)에서 적용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출생예정일 이후에도 제4조(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예정일에 0세로 하고 그 출생통지에 따른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출생일은 출생예정일로 합니다.
- ③ 이 계약의 계약해당일은 태아보장기간에는 최초계약일, 출생일 이후에는 출생일로 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적용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일 경우 계약일부터 출생시점까지의 태아보장기간에

태아위험보장을 위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남자 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액과 피보험자 여자 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액 중 높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② 출생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는 보험나이 0세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그 보장보험료는 계약체결시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하며, 피보험자 남자 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액과 피보험자 여자 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액 중 높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출생통지) 제2항의 확정이 있는 경우 제9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가 제4조(출생통지) 제2항에서 확정된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로 정산합니다.
 - 1. 계약체결시 적용한 성별과 출생시 성별이 다른 경우
 - 2. 계약체결시 출생예정일과 출생일이 다른 경우
 - 3. 계약체결시 보험기간과 출생시 보험기간이 다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또는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된 정산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이후에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예시		
· 보험료 정산 계산		
- 출생예정일 : 계약일 +6개월		
- 태아등록(출생일확정)일 : 계약일 +1년 (총 12회 납입)		
- 보험료(월납) : 태아 100원 / 0세 10,000원 (태아보장 5,000원, 기타 5,000원)		
구분	예정일 1개월 전 출산	예정일 1개월 후 출산
납입 보험료	60,600원 (= 6회*100원 + 6회*10,000원)	
필요 보험료	70,500 (= 5회*100원 + 7회*10,000원)	50,700원(= 7회*100원 + 5회*10,000원)
정산 금액	9,900원 추징	9,900원 환급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 가
 ① ") 38 " () 1 2

② 1 가
 ③ 1 1

④ 1
 3 () 가) 59 4()
 ① 1 1
 ② 1

2019 1 15	가	가	2019 6 1
가			
(2019 1 15 2019 5 31)			
1 2019 12 31)		2019 (2019 6	

③ 2 , " 4 () 가 " , 2 () 1 () 1 2 ()

2019 1 15	가	가	2019 6 1
가			
2019 12 1		100	15

④ 가 4 ()
 1 () 1 2)
 가 , 2 () 1 1 ()
 (1 2)

4 ()

5 ()
 ① ,
 ② 가

별표

별표1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보험기간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회사	보험회사
연단위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함.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은 2.5%임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상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상해보험계약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의사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용어	정의
약사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
약국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을 말하며, 조산원은 제외
입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병실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입원실료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입원제비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를 포함합니다),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입원수술비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입원의료비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한도종료일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통원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1

1.

- 1) ' ' ,
- 2) ' ' ,
- 3) ' ' ,
- 4) ,
- 5) 4) .

2.

' ' ,
() 가 가 .
, , , , , 가 , 가 .

3.

- 1) 가 가 2가 .
- 2) 가 2가 가 .
- 3) 가 .

4)

가) 가 가 .
5) 가) 가 가 .
가) 가 가 .

2

1.

가.

1)		100
2)		50
3)	0.02	35
4)	0.06	25
5)	0.1	15
6)	0.2	5
7)	()	10
8)		5
9)		10
10)		5

- 1) 3
- 2) ()
- 3) 가
- 4) (' ') 가 (' ')
 Movement) ^{주1)} : 0.02 (Hand
 1) : (Finger Counting) ^{주2)} 가
- 2) : 가
 30cm 가
- 5) () 1
- 6) () 가 ;
 가) () (가 1/2
) 20 (가)
- 7) () 1/2
- 8) 50 () 가 60%
- 8 가 ()
- 9) 8 가
- 10) () 1/2
- 11) 가 가 ((沒) 가 가 ((沒))

- 12) () 가 () 가 () 가

2.

가.

1)	80
2)	45
3)	25
4)	15
5)	5
6)	10
7)	10

- 1) 3 (dB: decibel)
 가 ±10dB (ABR)
- 2) 가 90dB
- 3) 가 80dB
- 4) 70dB , 50cm 가
- 5) 3 () 가

(ABR),

가

가

1) ' 가 1/2

2) () 가 1/2 가

1) ' 가 가 30

		14
		10
		4
	(1 12)	6
	(1 6)	4
	(6 6)	2
	(6 6)	0
	10m 가	20
	10m 가	12
	10m 60cm	8

2) ' 1 가 가

가) (CT, MRI) ()

3.

가.

1)	15
2)	5

1) ' ,

2) ' , ,

3) ' , 6

4) () ,

- (,) , (,)
- 14) 가 가
- 15)
- 16) 가 가 ()

- ()
- 1) 가) 1/2 ()
) 10cm ()
) 5cm
) 1/2
- 2) 가) ()
)
- 3) ()

5. ()

가.

1)	()	15
2)	()	5

- ()
- 1) 가) 1/4 ()
) 5cm ()
) 2cm
) 1/4
- 2) 가) 1/2 ()
) 1/2
- 3) 1/2 ()

- 1) ‘ (, ; ,) , (,)
- 2) ‘ () , () ()
- 3) ‘ () , () , ()
- 4) 가 , 가 5mm
- 5) () 1/2 ()

- 가
- 12 8×10cm(1/2 40cm², 1/4 20cm³),
 6 11 6×8cm(1/2 24cm², 1/4 12cm²), 6
 4×6cm(1/2 12cm², 1/4 6cm²)

6. ()

가.

1) ()	40
2) ()	30
3) ()	10
4) ()	50
5) ()	30
6) ()	15
7)	20
8)	15
9)	10

1) () , , 1 가 .
 2) () () , ()
 가) () 가 . (Cobb's Angle)
 () 가 .
) () () ,
 . [() 가
 .] ()
) () 「 」
 , ,
 () ,
 () ,

가 가

3) () 가 가
 4) 6 가 . ()
 5) CT, MRI 가
 6) 가) () 4 ()
) () , 1 , 2
 7) 가) () 3 ()
) () 1 1 2
) () (: 1, 2) CT (basion)
 (BDI : Basion-Dental Interval) 가
) (: 1, 2) CT , (arch)
 (ADI: Atlanto-Dental Interval)
 가
 8) () (: 1, 2) ()
) 2 () ()
 9) 가) () 35° ()
 가 20° , (가)
) () 60%
 () 90%

- 10) 가) ()
 가) ()
 10° ()
), (가)
) ()
 ()
 40% ()
 60% ()
- 11) 가) 1 ()
 (가) (가)
 (가) (가)
) ()
 20% ()
 ()
 40% ()
- 12) ' 2 (1 2) 가
- 13) ' 1 가
- 14) ' 가

7.

가.

1) () (, 2 , ,)	15
2) (), 가 (), ()	10

- 1) ' , (), 가 (, 2)
 , ,) (), 가 (), ()
- 2) ' 가) 가
 2.5cm ()
) (角) 20°
) (角)
- 3) ' 70° (), 가 (), (), ()
 (角) 20°
- 4) () 가 (角) 가 (角)

가

7) '가' 가

8) '가' (MMT) (complete injury) '0 (zero)'

9) '가' (MMT) (complete injury) '1 (trace)'

10) '가' (MMT) (incomplete injury) 2 (poor)

11) '가' (MMT) (incomplete injury) 3 (fair) 주) 가

12) '가' 가

13) '가' 15°

1) 3 가

2) 1 (가) 60%

9.

가.

1)		100
2)		60
3)	3	30
4)	3	20
5)	3	10
6)	3	5
7)	가	20
8)	가	10
9)		5
10)	가 5cm	30
11)	가 3cm	15
12)	가 1cm	5

1) 가 가 가 가

2) 가 가 (가)

3) ' 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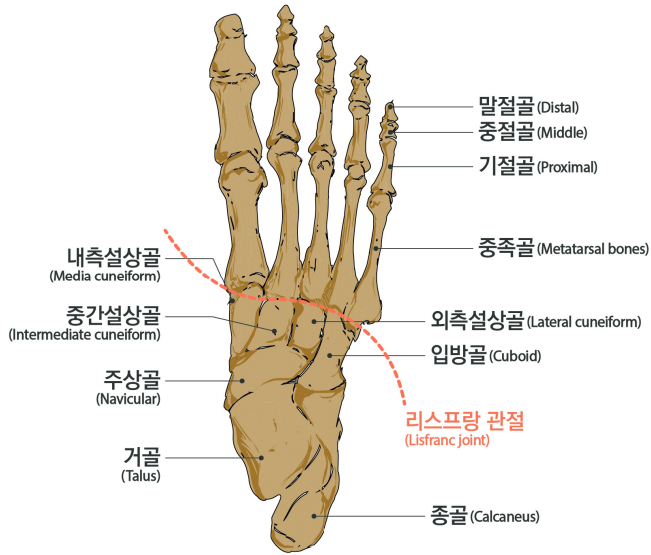
4) ' 3 () (), ()

1/2 가 , 가 1/2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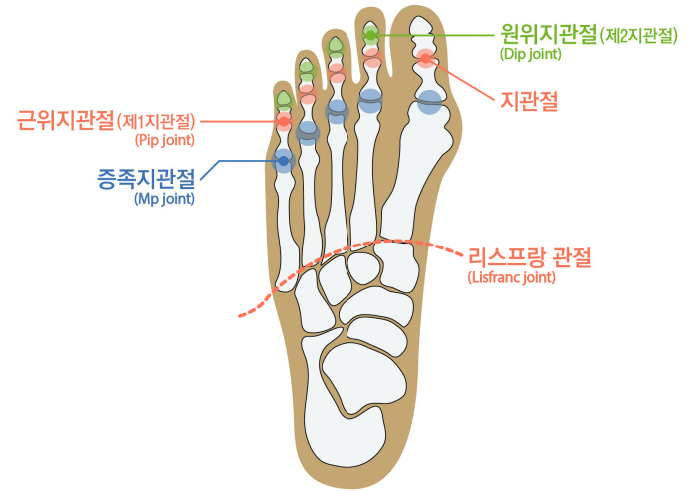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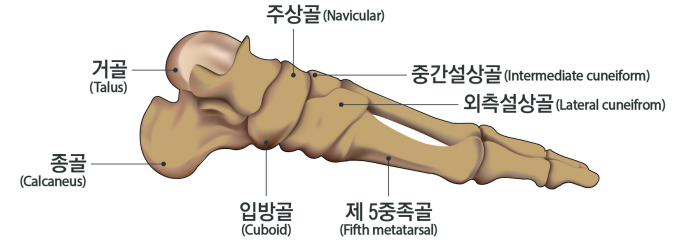
7) 가 가 가 가 ,

8) 가 가 가 가 「 가 」 47 1 3 가 가

가	가
---	---



가	가
---	---



12. .

가.

1)	100
2)	75
3)	50
4)	30
5)	15

- 1) ‘ , , .
- 2) ‘ , , .
 - 가) , , 가 가 ,)
- 3) ‘)
 - 가) , (~)) 3/4 가 3m
 -) 3/4
- 4) ‘ , ,
 - 가))
 -) , 50% ,)
 -) (,)
 -)
 -)

- 5) ‘ , ,
 - 가) 50cc , 가 ,) 1/2 가 가) 가 (PFT) (1 , FEV1) 40%
- 6) , ,
- 7) ‘ < > (ADLs) 가 , 가 ADLs ()
- 8) ,) 가 (.

「 」 ‘ ’ 6 2
 가
 GAF 70
) 3 가
) 가
) 가가
)
)
 , , 가 가
 (SPECT)
)
) () ()
), (), , , ()

) “ ” 8 6
 , , , , 가
) “ ” 5 10
 6
) “ ” 1 2
 6
) “ ” 가 3
) “ ” 가 3

3)

가) “ ” 가
) 가 (CT MRI,
 SPECT) , 18
 가
) 6 가
) 가 ()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4) ()

가) “ ()”
 (,)
) ()

(ADLs) 가		
1)		40%
2)	가 가	30%
3)	가 (walker) 가	20%
4)	() 가 가 , 가 100m	10%
1)	()	20%
2)	가	15%
3)	가 가 가 가	10%
4)	가 가	5%

1)	, , , ,	20%
2)	가 (가 가 가 (CIC), , ,	15%
3)	가 , , 가	10%
4)	2 , , 가 , ,	5%
1)	, , ,	10%
2)	, 가	5%
3)	가 ,	3%
1)	.	10%
2)	. 가 가	5%
3)	. 가 , () , ,	3%

4	.
4-1	
201	, , , (), () ()
202	
203	,
204	(), (), ()
205	(,)
206	
208	
210	
211	
212	[(), , (),]
213	[(), , (7t), (), ()]
214	[(), () ()]
215	()
216	, , , ()
219	
221	,
222	
225	()
226	(())
228	
227	
224	[()] , ,
217	
218	
229	()
230	. (.)
231	()

232	()
233	()
234	() () ()
235	
236	()
237	
238	
239	(,)
240	(,)
241	()
242	()
243	
244	
245	(,)
246	(,)
247	()
248	()
207	
209	()
220	
223	
249	() (,)
250	() ()

4-2		
301		K80
302		N20 N23
303		M40 M43, M45 M51, M53 M54
304		A15 A19, M01.1*, M49.0*, M90.0*, N33.0*, N74.0*, N74.1*, K67.3*, K93.0*
305		I83
306		N73 N74, A18.15+, A18.16+
307		M00 M03
		M05 M14
		M15 M19
		J99.0*
308		M93
		M94
		100 102, 105 109, 111, 113, 120 125,
		126 128, 130 152, 197, P29, Q20 Q26, R00 R01, R57, R93, B37.6+, A39.5+
309		160 169, G45 G46, Q28
310		110 113, 115, 011, 013, 014
311	()	E10 E14, 024, R73
312		E78
313		N80
314		E79, M10
315		H49 H51
316		H25 H27
317	()	K40 K46, N43
318		M80 M82
319		K65 K67

321		J44 J46
322		N75
323		-

가

1	[2017.10.19.] [14839 , 2017.7.26. ,]
---	--

15 ()

- 1.
- 2.
- 3.
4. 가
5. 가

3

6. 1 1

- 1.
- 2.
- 3.
4. 가

17 ()

3 ()

- 1.
2. 15 1 2 3 5
- 1 1

- 1.
- 2.
- 3.
- 4.
- 5.

가

가 3 2

22 ()

(5

가

< 2017.4.18.>
1 (2 1

< 2017.4.18., 2017.7.26.>

15 1 1 , 17 1 1 , 23 1 1
24 1 1

가

가

< 2016.3.29., 2017.4.18>

가

< 2017.4.18.>
가 2
3 18 2 1

< 2017.4.18.>

14

1 5
5
23 ()
, 가 , 가
(" ")
1. < 2016.3.29.>
15 2 17 2
2.
가 1
가 29
< 2016.3.29.>
24 ()
")
1. 15 2 17 2
2.
<2013.8.6.>
가 1
가
< 2015.7.24.>
가 3
< 2016. 3. 29., 2017. 7. 26.>
< 2016. 3. 29., 2017. 7. 26.>⁴

2 [2019.1.1.] [29421 , 2018.12.24.,]

17 ()
22
1. , 가
2. 가
3.
4. 가
5. 가
6. 1 5
22 2 " "
1. < 2017.10.17.>
2. 가. 18
19 2 4 ,
3. ()
4. 가 18 2 1 22 3
22 2 가
< 2015.12.30., 2017.10.17.>
22 5 14

. < 2015.12.30., 2017.10.17.>
1

12 2 (" ")

< 2015.12.30., 2017.10.17.>

3	[2019.1.1.] [15874 , 2018.12.11. ,]
---	---

42 ()
() 가

< 2018.3.27.>

1. 「 」
2. 「 」
3. 「 」 91
4. 「 」
5. 「 」

2

1. 2
2. 2
- 2

41 3

「 」 3 4
45

. < 2016.2.3.>

1 · 2 4

4 [2016.11.30.] [14183 , 2016.5.29.,]

15 ()
[(都農複合形態)]
1
[2012.10.22.]

5 [2018.2.1.] [14965 , 2017.10.31.,]

27 ()
가 5
가
1
< 1984.4.10.>
755 ()
가 가 753 754
가 가 753 754
1
[2011.3.7.]
777 ()
1. 8
2. 4
3.
[1990.1.13.]

공
통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6 [2019.1.1.] [2018-37 , 2018.12.28.,]

- 1-4 2()
- 6 2 3 18 " 가 "
- . < 2011.3.22.>
- 1. 7-49 2
- 2. < 2016.12.29.>
- 3. 「 」

7 [2018.11.1.] [15022 , 2017.10.31.,]

- 2 ()
- . < 2015.7.31.>
- 1 18. ()
- 19. " " , 가
- 가 가 , 가
- 가. 가
- .
. .
. .
. .
- 20. " " 가
- [2010.7.23.]

8 [2018.12.24.] [29429 , 2018.12.14. ,]

6 2() " "

- 1.
- 2.
- 3. 2 15
- 4. 3 15 , 16 " 18
- 2 19 " "

- 1.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22

- 12. 「 」
- 13. 「 」
- 14. 「 」
- 15. 1 14 " "
- 2 19 " "
- < 2013.8.27. , 2014.3.24. , 2016.3.11. , 2016.5.31.>

- 1.
- 2. 83
- 3. 175 , 176
- 178
- 4. 「 」

- 5. 「 」 (" "
- 6. 「 」
- 7. 「 373 2 가 「 " ")
- 8. 「 」 ,
- 가
- 9. 「 」
- 10. 「 」
- 11. <2014.12.30.>
- 12. 「 」
- 13. 「 」
- 14.
- 15. (12 13)
- 16.
- 17. 가.
- 18. 1 15 18 , 가
- [2011.1.24.]

금융사향
 금융약애보
 금융약관
 금융표
 법·규정

9 [2018.12.19.] [15755 , 2018.9.18.,]

651 ()
가
1 , 3
가
< 1991.12.31.>

657 ()
가 1
가
< 1991.12.31.>

10 [2018.12.31.] [16188 , 2018.12.31.,]

16 (.)
()
32 1

32 (.)
가

< 2015.3.11., 2018.12.11.>

- 1.
2. 「 」 2 3 (「)
」 2 1
- 3.

4.

5.

1 ()

)

< 2015.3.11.>

가 2 2

2015.3.11.> 가 6 3 . < 2011.5.19., 2015.3.11.> 가

2015.3.11.> 가 8 가 . < 2015.3.11.> 가

2015.3.11.> 1 5 . < 2015.3.11.> 가 (身元)

1. 가 . < 2015.3.11.> 1

2. 17 2 .

3. < 2015.3.11.>

4. (, 가), 가· 가 ,

5.

6. 5 가

36 ,

7. 가

8. 가가

9. ,

10.

2 ()

<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2016.12.2., 2017.10.24.>

1. " (藥事)" (鑑定) [(授與)]
2. " (藥師)" (藥事) () , " (藥事)" (藥事)
3. " " 가 [(藥局 製劑)] (가)
4. " " 가. (大韓民國藥典) 가 (藥理學的) 가
5. " " (生藥)
6. " (韓藥製劑)" ()

2 ()

. < 2015.1.28.>

1. " " , , (危害)가 가
 2. " " 가 (救助) 가
 3. " " ,
 4. " " ,
 5. " " 「 」 3 , , ,
 6. " " ,
 7. " " ,
 8. " " (業)
- [2011.8.4.]
- 35 2()
- [2011.8.4.]

13 [2019.1.1.] [606 , 2018.12.28. ,]

2 ()
「 " ") 2 1 "
")
< 2008.3.3. , 2008.6.13. , 2010.3.19. >
1. 1
2. 1 가 가
18 3()
,
1
, (, , ,
) , ,
[2015.12.18.]

14 [2018.11.15.] [15716 , 2018.8.14. ,]

3 ()
" " (公衆)
(" ")
< 2009.1.30. , 2011.6.7. , 2016.5.29. >
1. : , 가
가.
2. : 가
3. : , 가
가.
(「 」 3 3
「 」 58 1 2) 3 2
2 1
3
< 2009.1.30. , 2010.1.18. >
()
3 2()
(" ") 30
() ()
[2009.1.30.]

공
등
사
항

보
통
약
관

특
별
약
관

별
표

법
·
규
정

3 3()

. < 2011.8.4.>

1. 100

2. 100 300

3

7

3. 300

9

1

2

3

(

"

)

가

[2009.1.30.]

3 4()

가

. < 2010.1.18.>

1. 20

2. 77 1 가

3.

4. (疾病群別)

1

가

1

. < 2010.1.18.>

1

가

< 2010.1.18.>

2

3

가

. < 2010.1.18.>

가

. < 2010.1.18.>

[2009.1.30.]

3 5()

가

< 2010.1.18.>

1

2010.1.18.>

1.

2.

1

가

2

. < 2010.1.18.>

3

1

가

< 2010.1.18., 2015.1.28.>

1

4

. , 1

< 2015.1.28.>

1.

2.

3. 4 가 2

3

4

가

. < 2010.1.18., 2015.1.28.>

가

. < 2010.1.18., 2015.1.28.>

[2009.1.30.]

5 ()

가

가 9

가

. < 2010.1.18., 2012.2.1.>

1. 「 가 11 2 (" 가 ")

(" 가 ")

2. 가

3. 1 2 9

가

1 6 1 2 가 1

1 가 < 2012.2.1.>

가 < 2012.2.1.>

[2008.10.14.]

54 (가)

가 (" ")

< 2008.2.29., 2010.1.18.>

1 20

1 2 < 2008.2.29.,

2010.1.18.>

1. 28 1

2.

3.

4. 가 5

5. 5

3 , 3 5

가

가

< 2008.2.29., 2010.1.18.>

15	[2019.1.7.] [387 , 2017.1.6. ,]			
2 ()				
3	2	3	1 < 2015.7.7. , 2017.1.6.>	
[2011.12.15.]				
[1] < 2018.11.23.>				
(2)				
1.				
	250	(1000	1,600	1,600
		, 3.6	4.7	2,000
		15	1.7	
) 1.6	2.0	
		, 2.0		
	1.5			
	2.0			
	1000		15	16
	, 3.6			35
	1.6	2.0	4.7	
			1.7	
			2.0	
				가 9
				가 9

1. 1 2

가. : 2 0.5

(. , 1 1

1) , 가

(.) 가

2) ()

3) " "

3 1 5 " "

1)

2) , ,

3) 1 가

2. 가. 가

」 2 5

가 가

(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
(負荷, load)

2 ()

1. " "

2. " " 가

3. " " 가 가 가 가

()
[2001.12.31.]

10 ()
.
.
(
)
2 가

12 (「 」 3 2 3 가

13 ()
") ("

